내부통제규정

제정 : 2009. 2.16.

제1차 개정 : 2010. 7. 6.

제2차 개정 : 2018.12.21.

제3차 개정 : 2020. 3. 5.

제4차 개정 : 2024. 2.29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사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대내외 업무 및 공사와 관련된 거래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에 적용한다. 다만, 감사업무 및 리스크관리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내부통제" 란 법령을 준수하고, 기금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, 고객을 보호함으로써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.
- 2. "내부통제기준" 이란 내부통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.
- 3. "준법감시"는 내부통제기준과 내규 등 제반 법규 및 선관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적·상시적 통제활동을 말한다.
- 4. "내부통제체계" 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,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, 의사소통·모니터링·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.

제2장 내부통제체계

- 제4조(내부통제조직 및 역할) ① 사장은 내부통제<u>체계</u>를 구축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.
 - ②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은 사장을 보좌하여 내부통제업무를 기획・통할하며, 내부통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부서장 및 지사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통할하며, 리스크 관리, 회계, 정보보안, <u>감리</u>, 준법감시, 윤리경영 등 부서장(이하 "분야별 내부통제 통할 부서장")은 공사의 분야별 내부통제업무를 통할한다.
 - ④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5조(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) ① 내부통제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는 사장, 부사장 및 본부장으로 구성하며, 필요시 안건과 관련된 부서장 등을 임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-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,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본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6조(위원회의 역할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내부통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
 - 2. 내부통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 및 대책에 관한 사항
 - 3. <u>그 밖에</u>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사항</u>
 - ② 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는 보고받을 수 있다.
- 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- ③ 의결안건의 경우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는 회의 소집, 의사록 작성, 기타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- 제8조(내부통제실무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내부통제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)를 설치한다.
 - ② 실무위원회는 준법감시담당본부장과 분야별 내부통제 통할 부서장으로 구성하며, 내부통제실무위원장(이하 "실무위원장")은 준법감시담당 본부장이 된다.
 - ③ 실무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2항의 부서장 외에 추가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④ 감사담당 부서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실무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) ① 실무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내부통제 추진계획 수립 · 실행에 관한 지원
- 2. 내부통제 이행현황 점검 관련 지원
- 3. 내부통제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
- 4. 통제부서 간 정보공유 및 업무조율
- 5. 위원회 상정 안건의 심의 · 의결
- 6.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실무위원회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심의·검토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-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④ 의결안건의 경우 실무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실무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⑤ 실무위원회는 회의 소집, 의사록 작성, 기타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준법감시담당 팀장으로 한다.
- 제10조(준법감시담당부서) 준법감시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.
 - 1. 내부통제업무의 기획·통할
 - 2. 내부통제 이행현황 점검 및 보고
 - 3. 법규준수 실태 점검 및 조사

- 4.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감시
- 5.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

제3장 내부통제기준

- 제11조(업무분장 및 조직구조) ① 공사는 업무의 성격·절차·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조직구조를 설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.
 - 1.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것
 - 2.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무를 적절히 분리할 것
 - 3.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고 승인절차를 마련할 것
 - 4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는 동일한 부서내 또는 동일한 임직원에 의하여 겸임되지 않을 것
- 제12조(위험의 관리) ① 기금운영 및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은 계량화되고 지속적으로 인식·평가되어야 하며,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.
 - ② 위험관리시스템은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제되지 않은 위험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감시·점검되어야 한다.
- 제13조(정보관리 및 의사소통) ① 공사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련 임직원에게 신속·정확하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전달체계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③ 모든 대외 접수 발송문서는 접수 또는 발송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④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영정보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고객정보 등 비밀정보의 관리)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업무수행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

- 형태(문서기록·복사본·구두·파일·전자메일·팩스 등)로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비밀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는 일단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 정보로 간주한다.
- ③ 임직원은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비밀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⑤ 공사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비밀유지 협정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해당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⑥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다.
- ⑦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선관의무 및 고객이익 우선)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② 임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공사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고객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한다.
 - ④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.
- 제16조(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)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 및 내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7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 ① 임직원은 대내외 업무 및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, 허위·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②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제18조(이해상충 방지) ① 임직원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으로 공사 또는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② 임직원은 공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자산 또는 인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9조(의결권의 행사) ① 공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,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.
 - ② 공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,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20조(금융사고 예방) 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금전 출납은 각종 안전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 - ② 법인 인감 및 각종 도장은 전결권자의 결재여부와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, 분실·도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 - ③ 일상적인 경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비정상적인 거래의 발생 여부 및 각종 결재시 거래증빙과 상호대조 이행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
 - ④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1조(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) 제3장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장 보칙

제22조(하부위임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(제정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준법감시담당부서) 직제규정에서 정하기 전까지는 법무실이 준법감시 담당부서로서 업무를 수행한다.

부칙(1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. 7. 6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. 12. 21부터 시행한다.

부칙(3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. 3. 5부터 시행한다.

부칙(4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. 2. 29. 부터 시행한다.